



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

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

수신 회원 제위

(경유)

제목 2019년 사이버보수교육 안내

1. 귀하의 직장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
2. 관련 근거 : 「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20조, 제21조 제1항 제4호, 제22조 제3항 및 부칙 제3조
3. 이에 2019년 사이버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수교육을 신청 및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4. 특히,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방사선사에 대하여 「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2항에 따라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동법 제22조 3항 면허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 효력이 정지됨을 안내드립니다.

- 아 래 -

- 기 간 : 2019년 1월 1일 ~ 12월 31일
- 교육신청 :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 내 사이버보수교육센터
- 교육비(1시간) : 회원 10,000원 / 비회원 17,500원(간접비 포함)

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장

